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6. 11 선고 2023가단195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A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5. 14.

판 결 선 고 2024. 6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3층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. 9. 1.부터 월 1,3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. 5. 1. 보증금 20,000,000원, 차임 월 1,32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매월 말일 후불)으로 정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(2023. 8.분까지 42,920,000원까지 미납)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및 2023. 9.분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금진

별지